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치과 진료에 대한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기준

목적

본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치과 진료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Dentistry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즉 "코로나 19 치과 진료 임시 지침"은 치과 시설이 대기 및 응급 시술에 대해 재개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19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치과 보건의료 직원(dental healthcare personnel, DHCP)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성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응급 및 비응급 치료/대기 진료를 포함한 모든 치과 진료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고용주는 추가 예방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뉴욕주 재개의 2 단계 시점에 가장 잘 알려진 공중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자주 변경됩니다. 위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치과 시설 운영 및 응급과 비응급 치과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갱신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거나 운영 및 안전 계획에 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배경

2020년 3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0일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기업은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시를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응급 치과 진료는 필수 보건의료 운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2일에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발행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에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천 안면 가리개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에 Cuomo 주지사는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 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 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사업체 운영자/소유자가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재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 202.34 호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에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사업체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에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 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재개 3 단계가 주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며,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안전한 재개를 위해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해 주의 자료 수집 노력을 집계하는 새로운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6월 12일부터 재개 3 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준을 따르는 것 외에도, 사업체는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보건부 발행 지침 및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뉴욕주 내 책임감 있는 치과 진료 활동에 대한 표준

다음과 같은 최소 국가 표준 및 해당 연방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치과 진료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치과 진료 활동에 적용됩니다. 치과 시설 소유자/관리자 또는 치과 시설 소유자/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표준을 충족할 것을 책임집니다.

"치과 보건의료 직원"에 대한 언급에는 신체 물질 및 오염된 물품, 장비, 환경의 표면, 물 또는 공기 등 전염성 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치과 의료 관리 환경의 모든 유급 및 무급 직원이 포함됩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치과 보건의료 환경의 감염 관리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Infection Control in Dental Healthcare Settings)에 따라, 치과 보건의료 직원에는 치과 의사, 치위생사, 치과 보조원, 치과 실험실 기술자(진료실 내 및 상업적), 학생 및 교육생, 계약직 직원 및 환자 치료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감염성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 행정, 사무직, 관리, 유지 보수 또는 자원봉사 직원)이 포함됩니다.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및 절차의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I. 사람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핵심 활동의 안전상 더 가까운 거리(예: 치과 방문 및 시술 중 진료 제공)를 요구하지 않는 한 항상 환자, 동반 방문자, 직원 사이에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치과 시술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 치과 시설에서 환자 및 동반 방문자가 항상 안전 거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 거리개에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 기반 안전 거리개와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직원의 보호 장비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 II "사람", 하위 섹션 B "보호 장비"를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대기 공간 좌석을 수정하거나 제한하여 모든 방향에서 6 피트 거리를 허용해야 합니다(예: 의자 간격 두기, 하나씩 띄어 의자에 앉도록 지시).
 - 책임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할 수 없는 접촉이 잦은 물체(예: 장난감, 잡지, 펜)를 없애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방문자가 지정된 약속 시각까지 외부 또는 차량에서 대기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좌석 구역에서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책임 당사자는 물리적 장벽(예: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의 플라스틱 차폐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배치해야 하며, 접수 구역의 환자와 직원 간의 접촉을 제한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플렉스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나 파티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엘리베이터 대기 구역에서의 회중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해 계단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테이프 또는 화살표가 있는 표지판 등으로 좁은 통로, 복도, 공간에 양방향 도보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또는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이 모이는 구역(예: 엘리베이터 입구, 에스컬레이터, 로비, 환자 접수, 데스크, 건강 선별 스테이션 등)에 6 피트의 공간을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마커를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치과 시설 전체에 보건부 코로나 19 표지판과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의 표지판과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직장 또는 환경에 맞는 자체 맞춤형 표지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치과 보건의로 직원, 환자 및 방문자에게 다음을 상기시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안전 거리개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적절히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코로나 19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르십시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르십시오.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개인의 근접성을 줄이기 위해 책임 당사자는 환자에게 치과 예약 시 동반 방문자를 가능한 한 제한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책임 당사자는 환자 및 동반 개인에게 적절한 경우 개인 차량 또는 치과 시설 외부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하고 환자들의 치과 방문 또는 시술 예약이 겹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대기 구역의 인원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대면 모임(예: 직원회의)을 제한하고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상회의 또는 통신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통풍이 잘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이 서로 6 피트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개인이 의자를 하나씩 띄어 앉게 함).
-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 및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권고에 따라 진료실 내 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응급 상담에 적합한 경우 원격 치과 진료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이나 휴게실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점유량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표지판과 시스템(예: 사용 중 표시)을 시행해야 합니다.

C. 직장 활동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인 접촉 및 회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원만 있도록 제한합니다.
 - 직장 시간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현장 인력 감소.
 - 교대근무 설계(예: A/B 팀, 도착/출발 시간 교차).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적절한 거리두기를 지키며 동시에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적은 수의 환자로 치과 진료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치과 보건의료 직원이 방과 장비를 완전하고 적절하게 청소하고, 더러워진 개인 보호 장비를 교체하고, 아래에 설명된 대로 적절한 손 위생을 수행하기 위해 치과 시술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 19 대응 기간 치과 환경을 위한 감염 예방 및 통제 임시 지침"(Interim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Guidance for Dental Settings During the COVID-19 Response)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장 활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모든 소모품과 치과 기구를 적절하게 덮고 보관해야 합니다(예: 벽장, 서랍, 캐비닛).

- 필요한 멸균 장비에만 접근 가능하도록 환자 방을 마련하십시오. 노출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모든 소모품이나 장비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분무를 생성하는 기술을 제한하거나 피하려고 시도하고(예: 치과용 핸드피스, 공기/물 주사기, 초음파 스케일러 피하기) 손 기구 및 최소 침습/비의상성 수복 기법을 우선합니다. 분무 생성 기술이 필요한 경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예: 치과 보조자 지원 치과 기술, 대형 배출 석션, 덴탈 댐, 기술 지원 인원 제한)를 취하십시오.
-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유지하여 청결한 지역에서 오염된 지역으로 적절히 공기가 이동하도록 합니다. 난방, 환기, 공기 조절(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HVAC) 설정 및 적절한 공기 여과에 대한 추가 정보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 및 [직업 안전 보건 관리국 권고](#)를 참고하십시오.

D. 개인의 이동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상호작용(예: 근무 교대를 끝내고 떠나는 개인의 출구 및 근무를 시작하는 개인의 입구 별도 지정) 및 이동을 제한(예: 근로자는 가능한 한 자주 워크스테이션 근처에 머물러야 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재 안전 규정을 준수하면서 (1)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문자의 흐름을 관리하고 (2) 아래 섹션 III의 "절차" 하위 섹션 A "선별 및 검사"에 설명된 대로 건강 선별을 촉진하기 위해 입구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적용 가능한 경우 선별을 위해 시설 내부 또는 외부에 줄을 설 때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II. 장소

A. 보호 장비

- 위에서 언급했듯이 책임 당사자는 치과 기술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 환자 및 방문자가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가리개에는 코와 입을 안전하게 덮는 최소한의 천 안면 가리개 또는 외과용 마스크가 포함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환자 및 모든 동반한 개인에게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환자가 적절한 안면 가리개 없이 치과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 공급품이 적절할 경우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환자에게 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지참해 돌아오도록 요청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방문자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공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 202.34](#) 호에 따라 방문자를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분무를 생성하지 않는 모든 치과 기술을 수행할 때 수술용 마스크, 눈 보호구, 장갑, 보호복 등 적절한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표준](#)에 따라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할 때 치과 보건의료 직원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무가 생성되는 기술의 경우, 공급자는 국립 직업 안전 건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가 인증한 일회용 N95 또는 높은 등급의 호흡기, 눈 보호구(예: 고글, 안면 보호대) 장갑 및 가운을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치과 보건의료 직원을 위해 환자를 보기 전후 개인 보호 장비 제거 및 교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치과 보건의료 직원이 질병 통제 예방 센터 권장 사항을 따르고 제대로 개인 보호 장비를 쓰고 벗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무직과 같이 환자 관리와 관련이 없는 직무의 직원도 항상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 및 개인 보호 장비를 조달, 제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해야 하며 직장에서 직원에게 비용 없이 그러한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교체가 필요하거나 환자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안면 가리개, 장갑, 마스크 및 기타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치과 보건의료 직원이 개인 보호 장비를 쓰고 벗는 법에 대해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에서 제안한 순서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보호 장비 및 모범 관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안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안면 가리개 요구사항에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직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분무가 생성되는 특정 치과 절차 활동에 N95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 천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치과 보건의료 직원이 자신의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스스로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호흡기 또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하며, 또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책임 당사자가 업무 성격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더 보호가 잘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고용주는 적용 가능한 모든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환자에게 시설에 들어올 때/나갈 때 공용 공간(예: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적절한-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비접촉식 지불, 비접촉식 비누/수건 디스펜서 및 비접촉식 쓰레기통과 같은 비접촉식 기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접촉이 많은 영역에서 오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치과 보건의료 환경의 감염 관리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CDC Guidelines for Infection Control in Dental Health Care Settings) 및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시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해당되는 경우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각 환자 방문 또는 절차 후에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의 날짜,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치과 보건의료 직원이 치과 방문 또는 절차 완료 후 적어도 15 분을 대기하여 치과 작업실의 표면을 청소 및 소독하기 시작 전에 전염 가능성이 있는 비말이 공기 중에서 충분히 떨어지도록 해야 하며 공기로 이동하는 입자의 생성 및 활동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CDC Guidance on Generation and Behavior of Airborne Particles)에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치과 보건의료 직원이 최소한의 장갑, 수술용 마스크 및 고글이나 안면 보호대와 같은 눈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실을 청소하도록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현장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용: 비누, 흐르는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손 소독의 경우: 손 씻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최소 60%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 공용 구역(예: 로비)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독제는 입구, 출구, 대기 구역과 같은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함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손 세정제 스테이션 근처에 놓습니다. 손 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치과 시설 주변에 쓰레기통을 놓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위해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이 이러한 표면 사용 후에도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고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만진 표면은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적어도 각 교대근무,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수용량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병원 등급 소독제를 사용하여 장비와 도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직업 안전 보건 관리국 권고 및 코로나 19에 효과적인 것으로 뉴욕주에 등록되고 환경보호국이 확인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SARS-CoV-2에 오염된 치과 기기의 소독 및 멸균에 대한 표준 절차에 대해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건의료 시설 소독 및 멸균 지침(CDC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및 치과 보건의료 환경의 감염 관리에 대한 지침을 준수해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코로나 19로 확진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이동이 많은 구역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예: 엘리베이터, 대기 구역, 입구, 신분증 스캐너, 화장실 난간, 손잡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의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이 사용한 영역을 폐쇄합니다.

- 영향을 받은 구역은 폐쇄하고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해당 개인이 사용한 공유 건물 공간(예: 엘리베이터, 대기실, 화장실)도 폐쇄,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건물 내 공간을 점유한 모든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즉시 전달하고, 어떤 공간이 폐쇄되고 다시 열리면 이를 알려야 합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24시간 기다리십시오. 24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화장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면 사용을 위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과 밀접히 또는 근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직원 및 방문자는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작업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밀접 또는 근접" 접촉에 관한 정보는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 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한 후 7일을 초과하여 지났을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음식 및 음료를 금지하고, 집에서 점심을 가져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C.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 변경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첫 재개 시 직원, 시간 및 환자 예약 수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가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시행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지침, 교육, 표지판 및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운영을 재개하거나 확장하기 전에 직원에게 새로운 관행과 책임을 교육하기 위해 모든 초과 보건의로 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구두 의사소통 및 표지판을 통해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개인이 개인 보호 장비, 특히 안면 가리개에 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개인에게 상기시키도록 시설 안과 밖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III. 절차

A. 선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치과 보건의료 직원, 환자, 방문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 선별 관행을 시행해야 합니다.
 - 선별 관행은 직원 출근 또는 환자가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수행(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할 수 있으며, 또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선별이 완료되기 전에 개인이 서로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선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치과 보건의료 직원, 환자, 방문자에게 선별이 필요하며 개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a) 알면서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인 자 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함.
 - (b)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 및/또는
 - (c)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의 증상이 있었음.
- 코로나 19 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 즉시 알리도록 치과 보건의료 직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선별 설문지 외에도 미국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일일 온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자료(예: 체온 자료)의 기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건부 및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절차에 익숙한 고용주가 식별한 개인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담당자는 최소한 마스크를 포함하여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증상에 양성으로 선별된 개인의 치과 치료는 연기가 가능하며 환자에게 응급 치과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늦춰야 합니다. 응급 치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감염 예방 및 통제 임시 권고를 따르거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적절한 엔지니어링 통제가 있는 시설에 의뢰합니다.
- 코로나 19 증상에 양성으로 선별된 치과 보건의료 직원은 업무 현장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진단 및 검사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라는 지침을 동반하여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양성 사례에 대해 즉시 주 및 지방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치과 보건의료 직원이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또는 치과 보건의료 직원이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한 후 직장에 복귀할 때의 절차 및 정책에 관한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노동자를 위한 중간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선별 절차에서 수집한 모든 응답을 매일 검토하고 해당 검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설문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이 나중에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발생하면 알릴 당사자 연락처를 식별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 등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 모니터 요원을 지정합니다.
- 가능한 한, 책임 당사자는 시설에서 다른 개인과 밀접 또는 근접하게 접촉했을 수 있는 치과 보건의료 직원 및 방문자에 대한 매일의 일지를 유지하며,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이용해 또는 비접촉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 배달은 제외합니다. 일지에는 개인이 코로나 19로 진단될 경우 모든 접촉을 식별,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 일지에 환자 및 방문자 정보를 기록하도록 권장되지만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근무 또는 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설문지를 받고 검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연락처는 개인이 후에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설문지에 통보된 대로 알릴 당사자로 식별됩니다.
 - 시설에 대해 식별된 연락처는 양성 사례에 대해 개인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각각의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시설의 치과 보건의료 직원이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치과 보건의료 직원, 환자 또는 방문자로부터 양성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통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치과 보건의료 직원, 환자 또는 방문자가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장의 모든 접촉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해야 하며, 시설이 위치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해당 개인이 처음 코로나 19 증상을 느끼거나 양성으로 검사받은 시점(둘 중 이른 시점) 전 48시간 이내에 현장에 들어온 모든 개인을 통보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의 법과 규정의 요구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그들의 법적 권한에 따라 자택 격리 또는 검역을 포함하여 감염되거나 노출된 사람의 모니터링 및 이동 제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한 또는 근접한 접촉을 했다고 경고받고 추적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개인은 경고 시점에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직장 부지 내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데 지침이 되는 사업체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치과 시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치과 근로자 및 직원을 위한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권고
<https://www.osha.gov/SLTC/covid-19/dentistry.html>

미국 치과 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 직장 복귀 – 임시 지침 툴킷
https://success.ada.org/~media/CPS/Files/Open%20Files/ADA_Return_to_Work_Toolkit.pdf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